

의안번호	2209952
의 퇴 인	신영대 의원
회 답 일	2025. 6. 25.
추 계 번호	25F243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-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1조의36(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설)	○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입주한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, 투자진흥지구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감면 신설 - 감면율: 3년간 100% + 2년간 50% ※ 단,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, 투자누계액에 따라 감면한도 설정 - 적용기한: 2030.12.31.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21조의36(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설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「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‘전북특별법’)에 따라 지정된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(이하 ‘투자진흥지구’) 내 입주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투자를 하면 투자진흥지구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할 경우,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121조의36 신설)
- 전북특별법 제73조에 따르면,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는 일정 기준에 해당

하는 투자를 유치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에 대하여 종합
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

-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는 투자액 및 상시근로자 고용을 기준으로
하며, 업종별로 차등

[표 1]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해당하는 업종별 투자 기준(전북특별법 시행령 제23조)

업종	투자액	상시근로자
연구개발업	3억원 이상	5명 이상
복합물류터미널사업, 공동집 배송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, 항만배후단지 물류산업	5억원 이상	8명 이상
제조업, 전기통신업, 정보서 비스업 및 기타 과학기술 서 비스업, 영화 비디오 및 방송 제작업 등	10억원 이상	15명 이상

- 개정안은 투자진흥지구내 입주한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하면,
입주기업의 투자진흥지구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
법인세를 감면(안 제121조의36)

- 감면대상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수행한 투자진흥지구내 입주기업
- 감면내용: 소득세 및 법인세의 3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 감면

※ 단, 감면은 다음의 ①+②의 금액만큼 한도를 적용

① 투자누계액의 50%

② 상시근로자 × 1,500만원

(청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의 상시근로자는 1인당 2,000만원)

- 적용기한: 2030.12.31.
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향후 투자진흥지구내 입주기업의
감면요건 충족 여부,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예상소득, 투자누계액 및 상시
근로자 고용수준 등을 추정해야 하나, 현 시점에서 관련 정보 및 근거
규정의 부재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- 전북자치도에 따르면, 2025년 6월 현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은 이루어지지
않아 향후 투자진흥지구 대상지역 및 입주기업을 예상할 수 없음

-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근거법령인 전북특별법이 2024년 12월 시행되었으나, 아직
구체적인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지정에 대한 계획은 없는 실정

- 투자진흥지구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, 입주기업의 투자를 통한 감면요건 충족 여부, 예상소득, 투자누계액 및 상시 근로자 고용수준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
 - 또한, 감면요건인 투자규모, 감면한도 산정시 우대를 적용받는 서비스업 등에 대한 규정이 시행령에 위임되어있어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